



#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제1편 총칙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 ~ 제37조

## 1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

-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등
-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정해진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유해·위험 방지 업무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

- |                                     |  |   |                      |
|-------------------------------------|--|---|----------------------|
| ① 프레스 등 사용 작업                       | ⑦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 ⑩ 달비계 작업                                    | ⑯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 ②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                    | ⑧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해체 작업 / 노천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 터널의 굴착작업 / 구축물 등의 해체작업 | ⑪ 발파작업                                      | 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
| ③ 크레인 사용 작업                         | ⑨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 ⑫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 ⑱ 석면해체·제거작업          |
| ④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                      |  | ⑬ 화물취급작업                                    | ⑲ 고압작업               |
| ⑤ 건조설비 사용 작업                        |  | ⑭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 ⑳ 밀폐공간 작업            |
| ⑥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 ⑮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                      |

-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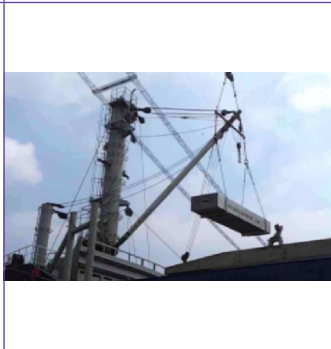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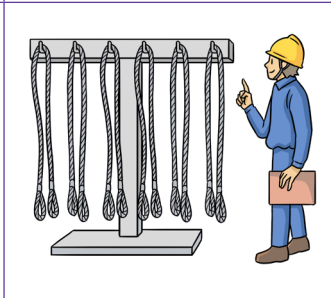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사진(예시)
1. 프레스 등 사용 작업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때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사진(예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양중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곤돌라, 승강기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나.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라.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사진(예시)
<p>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p>	<p>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p>	
<p>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p>	<p>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 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흠·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p>	 
<p>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p>	<p>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p>	
<p>13.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p>	<p>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p>	
<p>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p>	<p>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p>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사진(예시)
<p>14의2.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p>	<p>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p> <p>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p> <p>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p> <p>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p> <p>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여부</p>	
<p>15.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p>	<p>전선 및 접속부 상태</p>	
<p>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p>	<p>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p> <p>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p> <p>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p> <p>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p>	
<p>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p>	<p>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p> <p>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p> <p>* 선박에 설치하여 화물을 양·적하하는 장비</p>	
<p>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p>	<p>가. 흠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p> <p>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p>	

### 3 사용의 제한

-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 금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 미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 미실시
  - ☑ 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부적합
  - ☑ 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안전검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 부적합

### 4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 눈, 비,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

- 순간풍속 10m/s 초과	- 순간풍속이 15m/s 초과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본 콘텐츠는 산업안전보건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